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09

발의연월일: 2024. 7. 11.

발 의 자:정준호·박균택·정진욱

민형배 · 조인철 · 안도걸

전진숙 · 양부남 · 이학영

김남근 • 임호선 • 민병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가격보조,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격 부담이 여전히 커 확산에 제한이 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형자동차 규격에 맞는 소형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여 보급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자동차의 경우 시행령으로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보급의 촉진을 위해 소형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을 확대 지급을 법안에 명시하고자 함. 이에 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 대비 정률로 100 분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법률 제 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유자에게 필요한"을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중 소형자동차로서 전기자동차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가격 간 차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100분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
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	<u> </u>
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u>소유</u>	
<u>자에게 필요한</u> 지원을 할 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있다.	호의
<u><신 설></u>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
	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
	동차의 판매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자동차 중 소형 자동
	차로서 전기자동차에 해당하
	는 때에는 판매가격 간 차액
	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
	조금의 100분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u><신 설></u>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금
	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u> <신 설></u>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u> <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